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윤기섭 의원 외 27명

나. 의안번호 : 제2995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8. 11.

라. 회부일자 : 2025. 8. 14.

2. 제안사유

-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이행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‘공사시행자’로만 규정하고 있어, 발주처(예: 특수목적 법인)와 시공사 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.
-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, 교통소통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시공사에도 명확히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- 이번 개정안에서는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,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, 실제 이행 의무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부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,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.
- 사업시행자가 이행 주체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음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. (안 제2조 제4항과 같은조제5항 신설)
- 나.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4조제1항, 제5조, 제7조)
- 다. “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변경함. (안 제9조제8항)
- 라.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변경함. (안 제10조제1항)
- 마. “공사시행자”와 “정당한”을 “사업시행자”와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주체가 정당한”으로 변경함. (안 제10조제2항)

- 바. “공사시행자에게”와 “공사시행자가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”와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”로 변경함. (안 제11조제1항)
- 사. “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11조제2항 신설)
- 아. “공사를 시행한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13조제1항과 같은조제2항)
- 자.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14조의 제목과 제1항)
- 차.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14조제3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5. 08. 20. ~ 2025. 08. 24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조례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시 기존 조례의 ‘공사시행자’를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, 향후 교통소통대책 미이행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,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함

1) 교통운영과-12466호(2025. 8. 26.) 제332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 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공사시행자²⁾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자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해석상 혼란 등이 있는 바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와 “이행주체”로 구분하여 각 사안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의무 준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“사업시행자” 및 “이행 주체” 정의 신설 관련(안 제2조)

-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공사시행자” 또는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라는 표현은 현행 조례 제3조³⁾에 따른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는 주체인지 혹은 실제 교통소통대책을 시행하는 주체인지에 대한 조례 해석상의 모호성이 존재하고, 교통소통대책

2)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

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, 그 점용기간이 20일(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)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. 1. 도로의 신설·개설·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. 지하철건설 및 유지·보수 공사 3. 상·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. 전력 및 통신공사 5.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

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특정하는데 혼동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을 시행하는자와 교통소통대책을 실제 이행하는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

- 따라서, 동 조례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“공사시행자”라는 용어를 “사업시행자”와 “이행주체”(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는자)로 구분하여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도로점용공사장 관련 교통소통대책 이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이행주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■ 교통소통대책 수립 등, 시장조치,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련(안 제4조, 제10조·제11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기존에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개정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·제출 등의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

동 개정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할 것임

- 특히,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이행주체의 교통소통대책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 사업

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■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관련(안 제14조제3항)

-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이행주체에게 현행 조례 제10조4)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,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5)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동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를 구분하여 사안별 교통소통대책 의무 준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도로점용 공사장 인근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 증진과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4)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시장의 조치)

① 시장은 「도로법」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.

5)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

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